

대구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1161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유신

피 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상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에 2021. 2. 3. 체결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외상매출 채권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외상매출 채권 중 89,100,000원을 D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E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외상매출 채권 중 19,1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E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들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관하여도 주식회사 명칭 기재는 생략한다) 사이에 2021. 2. 3.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외상매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채권 중 89,100,000원을 양도하고, E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각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7. 27. D로부터 E의 영천공장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121,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하여 D에 대하여 합계 89,1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21. 2. 3. D와 사이에, D이 E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영천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800,000,000원 중 400,000,000원(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외상매출 채권)을 피고 B에게, 200,000,000원(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외상매출 채권)을 피고 C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양도채권 전체를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은 적극재산으로 E에 대한 영천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800,000,000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와 피고들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채무자들에 대하여 4,37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을 D이 피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할 당시 이미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무렵 D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에 현저히 미달하여 무자력의 정도가 중한 편이었던 점, D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전체 책임재산(800,000,000원) 중 75%에 해당하는 6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로써 D의 무자력의 정도가 질적으로 심화된 점, D은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채무 액수가 상당한 수준인데도 피고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부터 D와 거래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D의 재산상태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E 영천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피고들로 하여금 원청으로부터 직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에 관한 별다른 법률적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D의 모든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D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라고 권유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당시 D의 채무초과 사실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액인 89,100,000원을 한도로 수익자 별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들 별로 각각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9,1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원상회복방법으로는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때에는 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 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때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참조). 한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수령한 금전의 반환과 나머지 양수금의 반환 즉, 나머지 양수금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① 피고 B는 ①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외상매출 채권 중 89,100,000원을 D에게 양도하고, ② E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 C은 ⑦ 원고에게 변제로 수령한 금전인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D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외상매출 채권 중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19,1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박상인

별 지 목 록

(2021. 2. 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상의 채권표시)

주식회사(양도인)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영천공장 신축 공사대금으
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021. 2. 3.자 피고들과 체결한 아래의 양도채권.

1. 피고 주식회사 와 체결한 4억 원의 양도채권.
2. 피고 주식회사 과 체결한 2억 원의 양도채권.

【이 상】

